

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결정(안)에대한의견청취 심 사 보 고 서

2001. 2. 4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1월 2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2년 1월 26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7회(임사회) 제4차 위원회(2002년 1월 31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김성학)

- 가.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사유
 - “노량대 본청 건립공사”계획에 대한 해군본부 감사원 감사결과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권고에 따라 동일면적 범위내 위치 변경
 - 노량대 건립계획이 메낙골 근린공원으로 양분됨으로써 군사시설들의 보안성과 업무의 효율성 저하
 - 공원을 조성해도 접근성과 사용성의 저하우려
 - 군사시설을 한 곳에 통합배치 운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정된 공원부지를 사업부지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해군본부 소유의 대지와 동일면적만큼 교환

나. 현황(메낙골공원)

- 변경(폐지)할 토지 : 7필지 11,026㎡
 - 국(국방부) : 6필지 10,999㎡
 - 영등포구 : 1필지 27㎡
- 공원 편입대상 토지 : 16필지 11,026㎡
 - 국(국방부) : 15필지 10,960㎡
 - 빈 덕 원 : 1필지 66㎡

3. 심사결과 : 의견없음

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결정(안)에대한의견청취

의안 번호	22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. 24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안전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결정(안)

구 분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최초결정일	비 고
			기 정	변 경		
변 경	공 원	영등포구 신길동 895번지 일대	51,470	51,470	총고 208호 (’40.3.12)	전체면적 증감 없이 위치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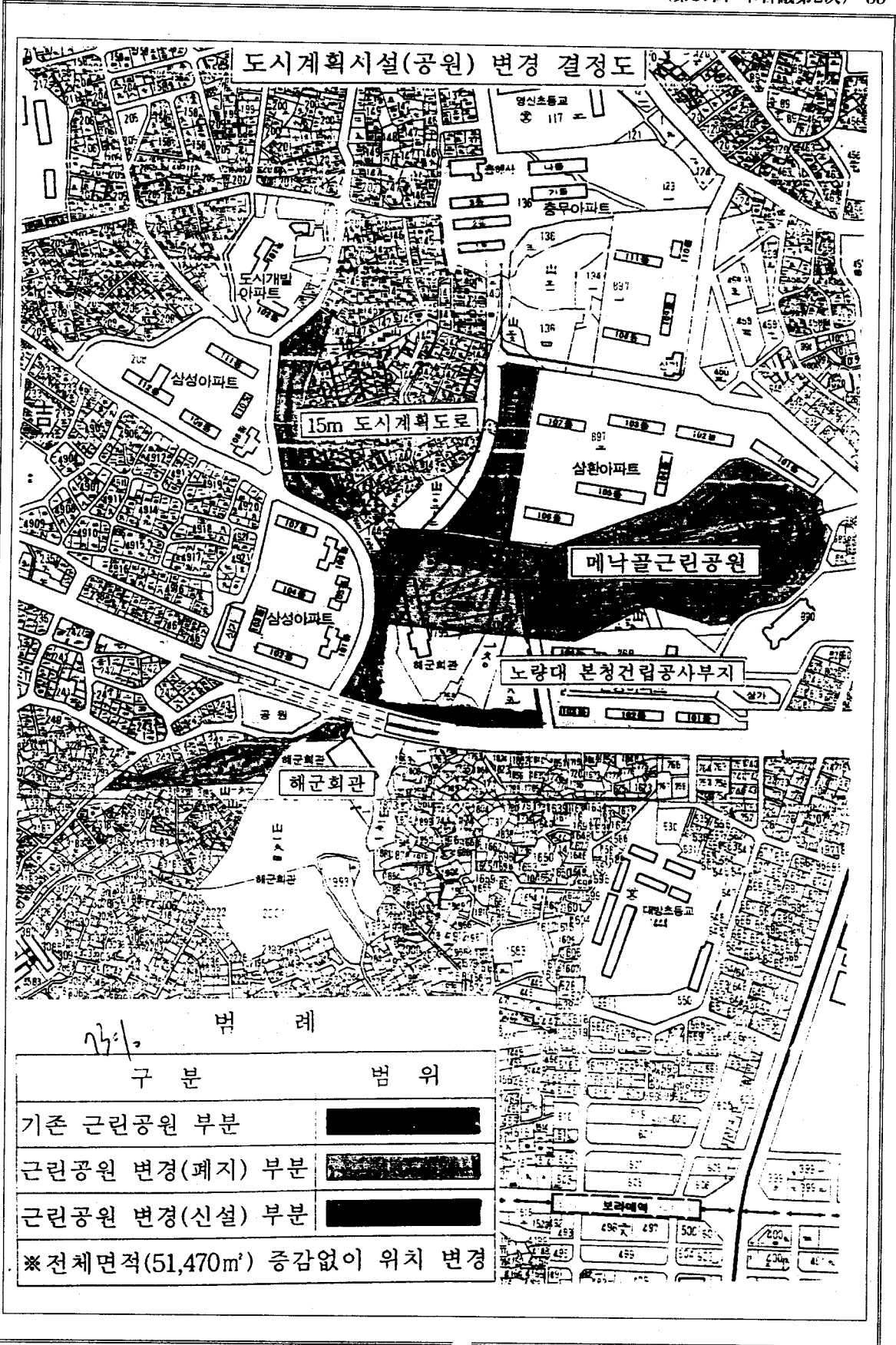
2.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사유

- “노량대 본청 건립공사”계획에 대한 해군본부 감사원 감사결과 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 권고에 따라 동일면적 범위내 위치 변경
 - 노량대 건립계획이 메낙골 근린공원으로 양분됨으로써 군사시설들의 보안성과 업무의 효율성 저하
 - 공원을 조성해도 접근성과 사용성의 저하우려
 - 군사시설을 한 곳에 통합배치 운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정된 공원부지를 사업부지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해군본부 소유의 대지와 동일면적만큼 교환

3. 메낙골공원 현황

- 변경(폐지)할 토지 : 7필지 11,026㎡
 - 국(국방부) : 6필지 10,999㎡
 - 영등포구 : 1필지 27㎡
- 공원 편입대상 토지 : 16필지 11,026㎡
 - 국(국방부) : 15필지 10,960
 - 빈 덕 원 : 1필지 66㎡

따로붙임 : 1. 도시계획시설(변경) 도면 1부
2. 도시계획 설명서(기초조사 및 환경성 검토서) 1부
3. 토지조서 1부. 끝.



■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공람공고에 따른 검토 의견

- 서울시(시설계획과, 공원녹지과)
 - 남쪽에 소규모로 위치하여 분리된 대체공원을 가능한 한 북쪽 부지로 한 곳에 지정되도록 조정 검토하고,
 - 해군본부 북지근무지원단의 입지상 부득이하게 하나의 대체공원으로 계획하는 것이 불가할 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부지 서쪽에 위치한 폭 15m 도시계획도로가 예산확보 이전에 우선 개설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군본부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절차 추진요망.
 - 메낙골근린공원중 현재 군부대에서 점유하고 있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폐지하고 공원과 접한 군부대지역을 공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원 전체면적의 증감없이 위치만 변경되는 사항이나,
 - 공원을 변경 결정할 경우 공원의 형태 및 선형에 불리한 점은 있으나, 현재 군부대에서 공원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전제하에 위치를 변경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빠른 시일내 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- 해군북지근무지원단
 - 근린공원 변경입안 결정전 우리 부대 분청공사가 이미 진행중에 있어 부지면적 등의 이유로 추후 도시계획시설에 시설물을 남측 도로변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득이 공원으로 양쪽으로 분리하였음
 - 우리 부대 서쪽에 위치한 15m 도시계획도로가 빠른 시일내 개설되어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나, 군사용 사유지 정리 및 군 숙소개선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세입자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 국방·군사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.

- 우리 구청
 - 공원의 총면적이 감소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메낙골근린공원과 군 사업시행 부지간에 대체공원을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(공원)을 변경한다면 사업추진이 원활하고 군시설의 보안성과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
 - 메낙골근린공원 부지중 대부분을 병무청이 사용하고 있고 토지보상 등 예산확보가 어려워 공원조성의 조기시행은 불투명함
 - 남측도로변에 분리되어 소규모로 계획된 공원의 위치변경 의견은 건축중인 시설의 이동이 불가하여 수용 곤란
 - 감사원 요구사항대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을 변경결정 입안하고자 함.

○ 환경성 검토 총괄표

검 토 항 목		검 토 결과	환 경 영 향	대책 및 반영사항	비고
자 연 환 경	토양포장 우수유출	O	· 현 근린공원부지 및 변경 근린공 원부지 대부분이 비포장(연병장) 면으로 운용되어 우수유출 효과 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		
	지형변동 결성토 균형	O	· 근린공원부지 변경이므로 지형변 동은 없음 · 변경부지의 고저차가 있어 결성 토 발생예상	· 변경부지내 자체 결성토 균형 가능 · 필요시 옹벽시공	
	녹지변동 녹지체계	O	· 동일 면적으로 공원부지 변경 · 부대 자체 녹지공간으로 인해 실 질적인 녹지면적 증가 · 변경 공원간의 단절발생	· 변경공원은 자체 적으로 소규모 공 원으로 조성 가능	
	습지보전	X	· 대상부지내 습지공간 없음		
	비오름	X			
생 활 환 경	일 조	X	· 단순한 공원부지의 변경이며, 대 상부지내 고층 건축물 계획이 없 어 일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		
	바 람	X	· 단순한 공원부지의 변경이며, 대 상부지내 대규모 건축물 계획이 없어 일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		
	경 관	O	· 기존 공원부지를 향후 연병장으 로 활용함에 따라 야관을 방해하 는 요인이 제거되어 양호해질 것 으로 예상		
	에너지	X	· 공원부지 변경사항이므로 에너지 변화없음		
	환경오염	X	· 대상부지내 환경오염시설 및 요 인없음		
도시계획시행중 예상되는환경영향			· 향후 공원조성사업 시행시 변경 부지내 건축물 철거로 인한 다량 의 건축폐기물 발생	· 사업시행 이전에 기존건축물 철거 및 적법절차에 의 한 폐기물 처리	

※ 검토결과 : X 해당사항 없음, O 환경영향 예상됨.

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토지조서

변경(폐지)할 토지

○ 영등포구 신길동

연 번	지 번	지 목	지적면적 (㎡)	소유자		비 고
				주 소	성 명	
1	산102-1	임 야	4,023		국(국방부)	
2	1795	대	3,459		국(국방부)	
3	1795-1	임 야	1,264		국(국방부)	
4	1795-2	임 야	1,162		국(국방부)	
5	1795-3	임 야	529		국(국방부)	
6	산 37-2	임 야	562		국(국방부)	
7	산161-1	임 야	27		영등포구	
계			11,026			

공원 편입대상 토지

○ 영등포구 신길동

연 번	지 번	지 목	면 적(㎡)		소 유 자		비 고
			지 적	편 입	주 소	성 명	
1	산37-3	임 야	7,818	5,080		국(국방부)	
2	산37-4	임 야	58	58		국(국방부)	
3	산38	임 야	66	66		빈 덕 원	
4	산39	임 야	595	595		국(국방부)	
5	산99-2	임 야	1,980	1,980		국(국방부)	
6	산100	임 야	99	99		국(국방부)	
7	산102-2	임 야	3,372	620		국(국방부)	
8	143-4	대	72	72		국(국방부)	
9	143-45	대	163	42		국(국방부)	
10	1769	대	310	151		국(국방부)	
11	1771	대	844	641		국(국방부)	
12	1782	대	100	102		국(국방부)	
13	1795-1	임 야	2,928	199		국(국방부)	
14	1795-2	임 야	3,198	11		국(국방부)	
15	1795-4	임 야	4,038	1,165		국(국방부)	
16	1868	대	136	145		국(국방부)	
계			25,777	11,026			